

의안번호	2209741
의 퇴 인	이병진 의원
회 답 일	2025. 8. 18.
추계번호	25B2242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1항제12호 (유해물질에 미세플라스틱 포함)	○ “유해물질”이란 농약, 중금속, 항생물질, 잔류성 유기오염물질, 병원성 미생물, 곰팡이 독소, 방사성물질, 유독성물질, <u>미세플라스틱</u>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※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 포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제1항제12호 (유해물질에 미세플라스틱 포함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유해물질에 미세플라스틱 포함(안 제2조제1항제12호)

-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법 제61조, 제62조, 제67조, 제68조, 제70조, 제88조, 제98조, 제98조의2에 따라 농수산물에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검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한 기술 개발, 해당 유해물질 농도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
※ 현행법에 따른 관련 정부 부처의 유해물질 조사 관련 수행 업무는 ‘[참고자료] 유해물질의 조사, 검사, 기술개발과 관련한 현행법 및 관련 부처의 수행 사업’을 참고

- 개정안에 따라 유해물질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할 경우 농수산물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조사, 기술개발, 위험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조사, 연구, 검사, 기준 마련 등에 필요한 정보가 부재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박선아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741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] 유해물질의 조사, 검사, 기술개발과 관련한 현행법 및 관련 부처의 수행 사업

(1) 유해물질 조사, 검사 등 관련 현행법 조항

제61조(안전성조사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·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·사용하는 농지·어장·용수(用水)·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(이하 “안전성조사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1. 농산물 가. 생산단계: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. 유통·판매 단계: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. 수산물 가. 생산단계: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.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: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<후략>
제62조(출입·수거·조사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·도지사는 안전성조사,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(생산·저장소, 생산에 이용·사용되는 자재창고, 사무소, 판매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)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. 1.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·사용되는 토양·용수·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.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, 저장, 운반 또는 판매(농산물만 해당한다)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<후략>
제67조(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·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제68조(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·사용하는 농지·어장·용수·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1. 농촌진흥청 2. 산림청 3. 국립수산물과학원 4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5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. 대학의 연구기관 7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<후략>
제70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·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·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, 저장단계(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 <후략>
제78조(생산·가공의 중지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·가공시설등이나 생산·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·가공·출하·운반의 시정·제한·중지 명령, 생산·가공시설등의 개선·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.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
3.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4. 제7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(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)에 따른 조사·점검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. 생산·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6. 생산·가공·출하·운반의 시정·제한·중지 명령이나 생산·가공시설등의 개선·보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7. 생산·가공업자등이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<후략>	제88조(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)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1. 정부에서 구매·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.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<후략>	제98조(검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·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「종자산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. 1.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·품종·성분 및 유해물질 등 2. 수산물의 품질·규격·성분·잔류물질 등 3.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·사용하는 농지·어장·용수·자재 등의 품위·성분 및 유해물질 등 <후략>	제98조의2(검정결과에 따른 조치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 <후략>
--	---	--	---

(2) 유해물질 조사 등과 관련한 정부부처 수행 사업

구분	세부사업명 (코드)-내역 사업명	사업 내용	회계	2025년도 예산 (백만원)
농림축산식품부	농산물안전성 조사(6032-301)-농산물 안전성조사	○ 농산물의 생산·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 ○ 농산물 중 유해물질 분석 ○ 유해물질 분석법 연구 및 검증	일반회계	24,086
해양수산부	수산생물 질병관리(3041-310)	○ 수산생물질병의 예방·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, 유해생물(기생충·속)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해수부(직접) 및 지자체(보조), 민간에서 사업수행	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	7,707
식품의약품 안전처	농축수산물 안전관리(1231-301)	○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관리 강화로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○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, 수거검사 ○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등 검사	일반회계	5,193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